「장기주택마련저축」 특약

제1조 적용범위

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 약관 및 적립식예금약관과 조세특례제한법, 동시행령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제2조 가입대상

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, 동시행령 등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
제3조 계약기간

장기주택마련저축의 계약기간은 10년으로 합니다.

제4조 저축방법 및 저축한도

장기주택마련저축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분기 300만원 범위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.

제 5 조 이율의 적용

- 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일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.
- ② 다만, 2003년 9월 29일이후 신규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서는 신규일로부터 3년까지는 가입당시 금리로 계산된 이자를 지급하고, 3년초과 기간에 대해서는 이율변경시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.

제 6 조 주택자금대출

거래처가 법령에서 정한 대출자격을 갖춘 때는 은행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주택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.

부 칙

구 국민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구 주택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02.9.23부터 이 특약을 적용합니다.

「적립식예금」 약관

제 1 조 적용범위

- ① 적립식예금(이하 '이 예금'이라 합니다) 이라함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에 미리 정한 금액이나 불특정 금액을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합니다.
-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 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.

제 2 조 지급시기

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. 다만,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제 3 조 저축금의 입금

거래처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약정한 날짜에 월저축 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

제 4 조 이자 및 만기지급금과 지연입금

① 이 예금의 월저축금을 매월 약정한 날짜에 입금 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저축금마다 입금일로부터

-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를 저축금 총액 (이하'원금'이라 합니다)에 더한 금액 (이하 '계약금액'이라 합니다)을 만기 지급금 으로써 지급합니다.
- ② 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.
- ③ 거래처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 였을 때에는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 에 따라 총지연 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 에 게시한 **입금지연이율**로 셈 한 금액을 계약 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 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 만큼 만기 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.
- ④ 총선납일수가 총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은행은 계약금액만을 지급합니다.

제 5 조 만기앞당김 지급

거래처가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한 후 만기일 전 1개월 안에 청구하면 은행은 지급하는 날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 앞당김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 에서 빼고 지급합니다.

제 6 조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

- ① 거래처가 만기일 후 지급청구한 때에는 만기지 급액에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 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 여 지급합니다.
- ② 거래처가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한 때에는 월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③ 거래처가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의 월저 축금을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에 청구하였을때 에는 전항의 중도 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합 니다.

제 7 조 자유적립식예금 특례

- ① 자유적립식예금이란 계약기간 동안 저축금을 달리하여 수시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합니다.
- ③ 자유적립식예금은 입금횟수에 관계없이 저축금 마다 입금일로부터 만기일 전날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 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와 원금을 만기지급금으로 합니다.
- ③ 자유적립식예금은 제3조, 제4조제1항, 제3항, 제4항, 제5조 및 제6조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제 8 조 법령위반시의 처리

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예금에 있어서 거래처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자격, 저축 한도 등 거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는 은행은 임의로 그 예금을 해지하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이를 즉시 거래처에 통보합니다.

부 칙

구 국민은행의 적립식예금 및 구 주택은행 의 적립식예금은 2002. 9.23부터 이 약관을 적용합니다